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3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한정애·이학영·정성호

송옥주 · 허종식 · 서영교

박홍근 · 장철민 · 강선우

이소영 · 강준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 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 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장기등 기증 희망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등) ① 제19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경우 담당의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완료된 후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기증기증자 등록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
- ②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사실을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방법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자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장기등 기증 희망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등) ① 제 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경우 담당의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완료된후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이행하여야 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장기증기증자 등록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 ②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또는그 가족이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기중의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제20조에 따른 장기구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신설>

② ~ ④ (생 략)

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 득기관의 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방법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자를 알 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 니한 자
- ② ~ ④ (현행과 같음)